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법률용어 변경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8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참고] 국가보훈법령 관련 이달희 의원 발의안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달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6.
3. 회부연월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순직군경’이라는 표현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생략)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순직군경</u> 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1. ----- ----- ----- <u>순직군경소방</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 호에 따른 <u>순직군경</u> 및 그 유족 에 대한 예우	2. ----- ----- ----- <u>순직군경소방</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른 순직군경·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어,²⁾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에 군인과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에서의 “군경(軍警)”은 일반적으로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는 말로 법률적 정의와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이 현행법에 따라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³⁾과 함께 현행법의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법률 용어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의 예우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참고: 국가보훈법령 관련 이달희 의원 발의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3) 함께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81, 2025.11.06)이 현재 정부위원회에 계류중임.

다만, 현행법 제59조제2항에서는 “순직군경”과 더불어 “재해사망군경”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동일한 취지에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의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84, 2025.11.06.)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법 개정시 동일한 취지에서 발의된 법률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이달희 의원)》

개정안	개정 내용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1)	◦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개정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4)	◦ “재해사망군경” ⁴⁾ 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5)	◦ “순직군경” 인용조문 개정 ☞ “재해사망군경” 인용조문 함께 개정 필요

인사혁신처는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안이 국가유공자법상 법률용어를 변경하면서 현행법상 인용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국가보훈법령 관련 이달희 의원 발의안(25. 11. 6. 발의, 2건)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의안번호 13981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순직군경(殉職軍警)</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 <u>순직군경소방(殉職軍警消防)</u> -- ----- ----- ----- ----- -----

* 이하 개정내용은 생략

□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의안번호 13984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 ----- ----- -----.
1. <u>재해사망군경</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 <u>재해사망군경소방</u> ----- ----- ----- ----- ----- -----

* 이하 개정내용은 생략